

2009. 4. 24. 의결, 2009. 7. 1. 시행

2021. 12. 6. 수정, 2022. 3. 1. 시행

## 5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

횡령·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(형법 제355조 제1항), 배임(형법 제355조 제2항), 업무상 횡령·배임(형법 제356조),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·배임(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- 10월	4월 - 1년4월	10월 - 2년6월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6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5년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1년6월 - 3년	2년 - 5년	3년 - 6년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2년6월 - 5년	4년 - 7년	5년 - 8년
5	300억 원 이상	4년 - 7년	5년 - 8년	7년 - 11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</li> <li>●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●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</li> <li>●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</li> <li>●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량 피해자(근로자, 주주, 채권자 등을 포함)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</li> <li>●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</li> <li>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농아자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</li> <li>●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누범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본적 생계·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●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</li> <li>● 소극 가담</li> <li>● 업무상 횡령·배임이 아닌 경우</li> <li>●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·수수한 경우</li> <li>●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● 횡령 범행인 경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● 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행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li>●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</li> </ul>

## [유형의 정의]

### 01 | 제1유형

---

- 횡령·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-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### 02 | 제2유형

---

- 횡령·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03 | 제3유형

---

- 횡령·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04 | 제4유형

---

- 횡령·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05 | 제5유형

---

- 횡령·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01<sup>1</sup>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

---

- 손해액의 약 1/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02<sup>1</sup>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

---

-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(예, 채권자)가 별도로 있는 경우
  -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

### 03<sup>1</sup>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

---

-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,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
  -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
  - 회사 인수·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04<sup>1</sup>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

---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,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
  -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
  -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

-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 05<sup>1</sup>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
  -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
  -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
  -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
  -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, 근로자,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(예컨대,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)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 06<sup>1</sup>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

-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## 07<sup>1</sup>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  - 금융, 증권, 무역,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  - 장부조작, 분식회계,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  -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  -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

-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 08 | 내부비리 고발

-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.

## 09 | 처벌불원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, 피해자나 유족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)이 처벌불원의 법적·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,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,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, 내용,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,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.

## 10 |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
-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(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/3 이상)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--

## 11<sup>1</sup>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

---

-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,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·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.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01<sup>1</sup>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02<sup>1</sup>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

## [공통원칙]

### 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<sup>6)</sup>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6) 2011. 4. 15. 수정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01<sup>1</sup>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02<sup>1</sup>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03<sup>1</sup> 동종경합범 처리방법

-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횡령·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,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.
  - ② 다만,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3을 감경하고,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2을 감경하되,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.<sup>7)</sup>

### 04<sup>1</sup> 이종경합범 처리방법

-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7) 2011. 4. 15. 수정

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- 다만, 횡령·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횡령·배임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## I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재범의 위험성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li>●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</li> <li>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</li> <li>●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</li> </ul>
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미합의</li> <li>●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</li> <li>●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</li> <li>●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</li> <li>●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재범의 위험성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● 반복적 범행</li> <li>● 비난 동기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본적 생계·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li>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● 참작 동기</li> <li>● 피고인이 고령</li> </ul>
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● 대량 피해자(근로자, 주주, 채권자 등을 포함)를 발생시킨 경우</li> <li>●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·수수한 경우</li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● 피해 회복 노력 없음</li> <li>●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●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</li> <li>● 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</li> <li>●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●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</li> <li>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li>●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</li> </ul>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-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
  -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,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다만,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
  -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다만,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<sup>8)</sup>

8) 2011. 4. 15. 수정